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150 - 1870

시행일자 1995. 11. 20.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1080	
부	시		
기획관리실장			
법무 담당관			
기안	법제국장		

제목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등 3건 공포

1. 제3회 서울특별시조례규칙심의회('95. 10. 6) 의결을 거쳐 내부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등 3건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

규칙제 2713 ~ 2715호

- 첨부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규칙중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안 1부,
 3.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규칙안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관(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등 3건을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기 바랍.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2713 ~ 2715호, 끝.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규칙공포 통보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등 3건을 시보에 게재 공포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기바랍.

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2713 ~ 2715호 1부(생략).



서울특별시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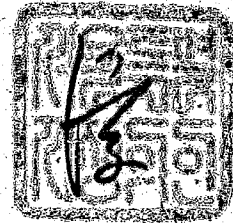
수신처 시정개발담당관, 행정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윤근



1995년 11월 20일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의 조정교부금 산정방법상 문제점을 보완, 합리적인 자치구재원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개정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기준재정수입산정시 구체적 보정방법을 명시하여 기준재정수입산정의 적정을 기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을 예산항목에 맞추어 현행 23개 측정항목·25개 측정단위를 12개 측정항목·19개 측정단위로 조정함에 따라 이에 기초가 되는 조정교부금산정기초자료대장항목을 변경함(안 제5조 제2항).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와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로써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자치구 경상적세외수입추계액의 일정비율
2.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당시의 자치구 지방세 추계액과 결산차액으로 인한 정산금액
3.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당시의 경상적세외수입추계액과 결산차액의 일정비율
4.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급격한 증감이 있었거나 당해연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급증 또는 급감이 예상되는 기타 세외 수입의 일정비율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할 때에는 전년도까지의 세입신장추세액 등 객관적·합리적 증가 또는 감소요인을 감안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정교부금산정기초자료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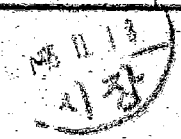
- 1. 지방의회 의원정수 : 명
- 2. 행정구역 면적 : km²
- 3. 가구 및 인구현황

인 구 수	가 구 수
명	가구

4. 공무원수

계	공 무 원 수				
	소 계	구	의 회	보건소	동사무소

5. 연간 과세건수



계	구 세	시 세	세 외 수 입		
			소 계	구	시

6. 저소득 가구수

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7. 환경미화원수 : 명

8.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등수	등수	등수

9. 도시계획 면적현황

총 면 적	개발면적	시가화 가능면적 (미개발 면적)	기타면적(개발제한구역, 하천, 공원등)
㎡	㎡	㎡	㎡

10. 도로연장 및 면적현황 (20m 미만도로)

계		개 설		미 개 설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m	㎡	m	㎡	m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u>제2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때에는 전년도의 결산액 또는 전년도까지의 세입신장추세액 등 객관적·합리적인 증가 또는 감소요인을 감안하여야 한다.</u></p>	<p><u>제2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로써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년도 자치구 경상철세외수입추계액의 일정비율 2.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당시의 자치구 지방세 추계액과 결산차액으로 인한 정산금액 3.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당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추계액과 결산차액의 일정비율 4.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급격한 증감이 있었거나 당해년도 산정기준일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급증 또는 급감이 예상되는 기타 세외 수입의 일정비율 <p><u>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할 때에는 전년도까지의 세입신장추세액 등 객관적·합리적 증가 또는 감소요인을 감안하여야 한다.</u></p>

